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 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94 - 39
----------	---------

제안년월일 : 1994. 10. 24.

제안자 : 김영수위원외 1인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진술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의회나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등에게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등 실비와 감정료를 지급(안 제2조)
- 나. 실비지급의 예외 : 의회의원,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소속기관에서 여비등을 지급하는 공무원(안 제3조)
- 다. 지급기준은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별표1로 함.(안 제4조)
- 라. 일수계산은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산정(안 제5조)
- 마. 지급제한 :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음.(안 제6조)

3. 조례(안) : 별첨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실비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실비)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의한다.

제 3 조(실비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
2.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과장 및 동장
3.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직할시 달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기타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등을 지급하는 공무원

제 4 조(실비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실비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별표1과 같다.

제 5 조(실비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 6 조(실비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 조례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별표1)

여 비 정 액 표

등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 동 차 운	현지교통비 (1인당)	숙 박 료 (1야당)	식 비 (1일당)
특호	1 등 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원	실 비	11,000원
1 호	1 등 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원	20,700원	11,000원
2 호	1 등 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원	20,700원	11,000원
3 호	2 등 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원	16,200원	10,500원
4 호	2 등 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원	16,200원	10,500원

<비 고>

1.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 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 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숙박료란의 실비는 신용카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 의증인등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 4 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 기준표에 의한다.(별표 1, 2)

제 5 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 6 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원)

등급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비 (1일당)	식탁료 (1야당)
특호	1등급	1등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을지 4,500	17,000 15,000	11,000 9,500	2,000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을지 4,500	17,000 15,000	11,000 9,500	8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갑지 5,000 을지 4,500	17,000 15,000	11,000 9,500	8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갑지 4,500 을지 4,000	14,000 11,500	10,500 9,000	800
제4호	3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갑지 4,000 을지 3,500	11,500 9,500	10,000 8,500	800

<비 고>

1. "갑지"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 및 기타 지역으로, "을지"는 갑지외의 지역으로 한다.
2.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
3.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 3등급은 무궁화호·보통실 또는 통일호 특실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4.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운항만청장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2]

의회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

여 행 거 리	지 급 액
12킬로미터 이상	별표1의 현지교통비 전액
12킬로미터 미만 8킬로미터 이상	별표1의 현지교통비의 5할
8킬로미터 미만 2킬로미터 이상	대중교통요금 실비정액
2킬로미터 미만	지급하지 아니함

비고 : 대중교통이라 함은 버스 또는 지하철 요금을 기준으로 하되, 대중교통수단의 정기운행간격이 1시간이상인 지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반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